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997. 3. 14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   - 제 출 : 1997년 3월 6일
   -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- '96. 2.13일 공포 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의 직명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변경

  - 위 원 장 : 보사환경국장 → 사회복지국장
  - 부 위 원 장 : 사 회 과 장 → 사회복지과장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본 개정조례(안)은

- '96. 2.13일 공포시행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명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